



2025 ISU 윤리 강령

ISU 정관에 따라 ISU 집행위는 ISU 윤리 강령의 개정판을 검토하고 채택했습니다.

본 통신문은 ISU 윤리 강령 2025를 포함하며 2641 통신문을 즉각적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버전 대비 변경된 사항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회장 김재열
사무총장 Colin Smith



국제빙상연맹

윤리강령 - 2025

제 1조. 목적

ISU 윤리 강령의 목적은 ISU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명확한 행동과 성실 기준을 수립하고, ISU와 관할 스포츠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과 내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ISU관할하에(ISU스포츠) 금지하고 ISU 대회, 회의 및 기타 ISU 활동, 특히 선수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참가자를 모든 형태의 괴롭힘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제 2조. 적용범위

2.1 개인 적용 범위

본 윤리 강령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모든 사람입니다. ISU 이벤트 또는 활동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참가자로서 지위를 주장하거나 추구하면서 어떤 자격으로든 ISU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든 ISU 임원, ISU 위원, ISU 회원국, ISU 직원 및 컨설턴트, ISU 대회 조직위원회 및 해당 임원 및 자원 봉사자, 스케이터, 코치, 의사, 팀 리더, 그 외 1)선수를 서포트하는 모든 사람. 수행원의 기타 구성원 및 ISU와 관련된 행위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타 모든 사람.

2.2 물리적 적용 범위

- a) 본 윤리 강령은 ISU의 이해 관계가 관련될 때마다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람이 ISU 이벤트 또는 활동에 참석은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동안 그리고 ISU 이벤트 또는 ISU 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동이나 진술이 ISU의 이익이나 평판, ISU 스포츠의 명성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 적용됩니다.
- b) ISU 윤리 강령은 ISU 이벤트나 활동 기간 중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국내 및 ISU 회원 내부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장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출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 ISU 윤리 강령은 제3자 주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요구 사항은 ISU 규정, 특히 오픈 인터내셔널 대회를 관장하는 ISU 커뮤니케이션(현재 ISU 커뮤니케이션 No. 2171) 및 해당 업데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선수를 서포트하는 사람: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스텝, 오피셜, 의료인력, 준의료 인력, 부모 또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선수와 함께 일하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기타 모든 사람. (세계 반도핑 규정 2021 정의.)



- d) 국제 일정에 따라 행사를 조직하는 ISU 회원은 이 윤리 강령의 부록에 제공된 윤리 선언을 준수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e) ISU 회원 및 제3자 주최자는 이 규정을 내부 활동에 적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제 3조. 일반 행동 기준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 행동과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정직, 존중, 공정성, 공정한 플레이, 윤리적 행동 및 스포츠적 태도의 최고 기준을 보여야 하며 ISU 또는 ISU 스포츠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 ISU, ISU 스포츠 및 ISU 스포츠의 후원을 받는 모든 사람의 공정성, 정직성 및 성실성에 대한 내부 및 대중의 신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진술에 적용되는 동일한 윤리적 제한은 소셜 미디어 사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ISU 오피셜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ISU 오피셜은 소셜 미디어에 다른 오피셜, 스케이터, 코치, ISU 회원 또는 그들의 대표, 자원봉사자 또는 ISU 직원을 포함한 관련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되며, 오피셜의 임무, ISU에서 내린 결정 또는 ISU 이벤트의 평가 또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4조. 차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및 성적 특성 포함),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운동 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조. 표현의 자유

5.1 ISU 윤리강령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ISU 이벤트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경기장 또는 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2 본 윤리 강령이 적용되는 ISU 이벤트 및 활동에서 스케이터 및 이 강령이 적용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 미디어와 인터뷰할때 미디어와의 접촉을 위해 예약된 구역 및 센터에서
- 기자 회견 및 인터뷰 중
- 팀 회의에서
- 기존 또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 경기 시작 전 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예: 제스처)
 - i) ISU 헌장 및 ISU 규정, 이 윤리 강령을 포함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ii) 사람, 국가, 조직 및/또는 그들의 존엄성을 직간접적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 iii)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예: 다른 스케이터 또는 팀의 국가를 부르는 동안; 다른 스케이터 또는 팀의 소개나 프로토콜(예: 깃발, 배너 등을 펼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방해; 사람이나 재산에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또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 등).

제 6조. 괴롭힘 및 학대

6.1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성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를 삼가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또는 일회성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되는지 여부, 대면 또는 온라인(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특히 권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에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권력 또는 권위의 위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대는 방치 또는 태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2 본 조항의 목적

- "성희롱"은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성적 성격의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학대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행"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접촉, 접촉 또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 동기가 조작되거나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될 수 없는 경우, 의존 관계에 따라 동기가 강요, 조작, 획득되거나 법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 "신체적 학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은 외상 또는 원치 않는 행동(예: 선수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발로 차거나 물거나 화상을 입거나 기타 신체적 상해를 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강제적이거나 부적절한 신체 활동(예: 부상을 입거나 고통을 겪을 때 연령 또는 체격에 맞지 않는 훈련 부하, 또는 괴롭힘), 강제 알코올 섭취, 또는 강제 또는 전신 도핑 관행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학대"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권력 분화된 관계 내에서 의도적이고 장기간 반복되는 비접촉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학대"는 감금, 격리, 언어 폭력,



굴욕, 협박, 유아 학대 또는 정체성, 존엄성 및 자긍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 모든 대우를 포함한 모든 원치 않는 행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감금, 격리, 언어 폭력, 괴롭힘, 굴욕, 협박, 유아 학대 또는 정체성, 존엄성 및 자긍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 모든 대우를 포함한 모든 원치 않는 행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학대"는 "정신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온라인 학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로운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이나 특정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증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신체적 외모와 같은 요인에 기반하거나 성적으로 표현됩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흔한 "온라인 학대"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레밍: 플레밍은 특정 대상에게 위협적, 학대적 또는 무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 괴롭힘: 괴롭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한 형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것은 개인이나 그룹에 학대적,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또는 불쾌한, 합의되지 않은 성적 또는 친밀한 접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모욕: 모욕은 대상의 신뢰 또는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대상의 평판이나 성격을 부당하거나 악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 아웃팅: 아웃팅은 사진, 비디오 또는 스크린샷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누군가의 사적 또는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 신상, 성적 지향 또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은 전자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여 개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두려움이나 고통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 괴롭힘 또는 심각한 경우 신체적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무시 또는 태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코치 또는 선수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최소한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게 허용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만 또는 과실"은 선수 안전이 누락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시 또는 태만"에는 선수에게 음식 및/또는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불충분한 휴식 및 회복, 안전한 신체 훈련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발달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체격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정의는 코치와 그 외 선수를 서포트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 7조. 괴롭힘 및 학대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절차

7.1 ISU 대회 또는 기타 ISU 활동 기간 동안 괴롭힘 또는 학대 사건의 영향을 받거나 목격한 사람은 ISU 징계 절차 절차 규칙에 따라 주장된 위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 ISU Communication No. 2001) 또는 다음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ISU 대회의 ISU 대표
- ISU 이벤트 디렉터 / 매니저;
- ISU 의무위원회 위원장
- 지정된 ISU 안전보호 담당, 현재 Ms. Cristina Ibarra(safeguarding@isu.ch). 특히 운동선수에 대한 괴롭힘이나 학대를 관찰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ISU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보고 방법에 관해 개인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선수가 사건에 연루된 경우: 모든 ISU 선수 위원회 위원.
- 도핑 사건이나 의심 사항을 신고하려면 REVEAL(<https://www.reveal.sport>)에 접속하면 됩니다. REVEAL은 ISU와 협력하여 국제 테스트 기관(ITA)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도핑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항, 듣거나 경험한 사항을 완전히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7.2. 위의 보고 채널을 통한 선수의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모든 보고는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ISU 안전보호 담당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ISU 안전보호 담당은 이러한 보고가 가능한 한 문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보고자의 이름, 직책, 주소, 연락처 정보 및 서명, 보고의 근거와 관련된 정보(사실 및 증거 포함, 예: 비디오 녹화, 사진, 기타 서류 또는 전자 증거, 주장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의 이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SU 안전보호 담당은 보고서의 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경우 ISU 의료 위원회 의장 및/또는 ISU 법률 고문과 협의한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자에게 문제를 ISU 징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적절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지방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지 권고합니다.

신고자가 ISU 징계 위원회에 문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ISU 안전보호 담당의 권고에 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ISU 안전보호 담당은 보고서를 모든 의견과 함께 ISU 집행위에 전달해야 하며, 그러면 집행위는 ISU 징계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지 여부와/또는 자체 명의로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ISU 안전보호 담당은 신고자의 명확한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7.3 ISU 기관 및 ISU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괴롭힘 또는 학대 혐의 사건, 관련자의 개인 정보, 조사 중에 수집한 기타 정보 및 ISU 기관 또는 ISU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자격으로 알게 된 조사 결과("기밀 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7.4 기밀 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절한 개인 또는 당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ISU 헌장 제25조에 따라 시작된 ISU 징계 위원회의 징계 절차 내에서; 또는
-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학대가 계속되어 피해자, 특히 운동선수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이러한 기밀 정보가 잠재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7.5 위의 7.3항 및 7.4항에도 불구하고, 기밀 정보를 포함한 ISU 징계 위원회의 결정은 ISU 헌장 제28조 2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할 때 ISU는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받지 않고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능한 한 특정 사례에서 사생활 보호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보고자 또는 기타 증인의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7.6 다른 조직과의 상호주의

- a) ISU 이벤트 또는 활동 참가자에 대한 다른 조직(예: ISU 회원, 국가 반도핑 기관, 국가 안전 스포츠 기관, WADA 등)의 정식 징계 결정은 ISU가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ISU 정관 및 일반 규정 또는 ISU가 준수하는 기타 해당 법률, 규칙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ISU가 다른 조직의 징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상황 또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b) 징계 결정은 ISU 법률 고문과 ISU 집행위에서 검토하여 상호주의 부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c) 다른 조직의 징계 결정에 대해 ISU가 상호주의를 인정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은 ISU 헌장 제2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ISU 징계 위원회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사기, 부패, 횡령, 부당이득

이 윤리강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은 사기, 부패, 횡령 또는 ISU 자금, 자산 및 서비스의 오용을 포함한 ISU와 관련 없는 이익(개인의 사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위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제 9조. 개인적인 이득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이벤트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보수나 수수료, 또는 어떤 성격의 은폐된 혜택이나 서비스를 요구, 수락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ISU 또는 ISU 회원의 규정이나 정관에서 허용하거나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조, 선물 및 호의

10.1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ISU 또는 ISU 스포츠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선물, 지불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선물 및 기타 호의(예: 오락)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현행 지역 관습에 따라 명목상의 가치에 대한 고려의 표시이자 일반적인 환대의 표현 이상입니다.

10.2 2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은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러한 선물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령자는 선물을 ISU 사무국에 전달하고 기부자에게 선물이 ISU를 대신하여 수락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0.3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사람은 ISU 회장과 ISU 사무총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2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기타 호의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 승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 11조, 이해충돌

11.1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해 상충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11.2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 a) 합리적으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 b) 개인적 또는 가족의 이익이나 대중의 찬사를 받는 결정을 내리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c) 제3자 또는 자신의 ISU 회원에게 부당한 호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11.3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는 동안 ISU에 대한 독립적 지위, 의무 및 충성심과 상충되거나 합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ISU 회원 내의 공식적인 직책을 동시에 맡아서는 안 됩니다.



11.4 개인적, 상업적 및 가족적 관계

- a) ISU 윤리강령은 "이해 상충"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ISU 윤리강령에 명시된 대로 임명된 ISU 오피셜 및 기타 참가자에게 적용됩니다.
- b) 윤리 강령의 광범위하고 개인적인 적용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ISU는 다음을 지침으로 제시합니다.
 - i.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은 국가 대표팀의 일원으로 행동하거나, 팀 리더, 보조 팀 리더, 보호자, 팀 의사 또는 팀 코치로 행동하거나, 국가 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ISU 기술 위원회의 코치는 ISU 이벤트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음).
 - ii. 피겨 스케이팅에 한해, ISU 오피셜(심판,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등)은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ISU 오피셜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국가대표팀, 팀 리더, 보조 팀 리더, 보호자, 팀 의사 또는 팀 코치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U 오피셜은 ISU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 댄스),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OAC 멤버로 활동하는 시즌과 동일한 시즌에 팀 리더(또는 보조)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iii.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스케이터의 가족은 해당 스케이터가 참가하는 대회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람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다른 대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iv.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부적격자의 가족 또는 코치의 가족은 부적격자 또는 코치의 경쟁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람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ISU 이벤트 또는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다른 대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v.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가족"이라는 용어는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해 경쟁하는 스케이터, 부적격자 또는 코치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위치에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vi. 이벤트의 오피셜 구성과 관련하여 이벤트에 임명된 ISU 오피셜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해상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레프리가 결정합니다.
 - vii. 다음은 ISU 오피셜의 이해 상충 상황에 대한 추가 사례입니다.
 - A. ISU 오피셜이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또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 경기가 끝나기 전에 ISU 회원국의 "팀"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 상충입니다.
 - B. 코치인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그의 이전 제자가 참가하는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테크니컬 패널에



참여하기 전에 한 시즌을 기다려야 합니다.

C. 코치이기도 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본인의 선수가 다른 종목에 참가하더라도 동일한 대회에서 경쟁하는 스케이터의 코치인 경우 기술 패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D. ISU 오피셜이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배우자, 파트너 및/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대회에서 다른 종목의 스케이터를 코칭하는 경우 이해 상충입니다.

E. ISU 오피셜은 심판은 배우자,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팀 리더 또는 보조 팀 리더인 경우 어떤 종목의 ISU 이벤트, 동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F. 코치이기도 한 ISU 오피셜의 경우, 코치가 한 종목의 ISU 챔피언십에서 오피셜로 활동한 다음 같은 시즌에 같은 종목의 다른 ISU 챔피언십에서 스케이터를 코칭하는 것은 이해 상충입니다.

G. 10월 1일부터 각 경기 시즌의 마지막 ISU 선수권 대회가 끝날 때까지, ISU 선수권 대회, 동계 올림픽 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배정된 ISU 오피셜은 해당 경기의 첫 공식 연습이 시작되기 전 60일 동안 해당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및/또는 코치)에게 직접 또는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ISU 이벤트 및 챌린저 시리즈 경기의 경우, 배정된 ISU 오피셜은 경기의 첫 공식 연습이 시작되기 전 30일 동안 선수(및/또는 코치)에게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이나 피드백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경기 세그먼트가 모두 끝나고 최종 결과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후에는 배정된 ISU 관계자는 선수(및/또는 코치)에게 경기에서의 선수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c) 기술 패널 임원 및 심판

기술 패널 및 심판의 구성원이 피겨 스케이팅 경기의 결과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하여 특히 ISU 그랑프리 시리즈 이벤트, ISU 그랑프리 파이널, ISU 챔피언십,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게임, 동계 올림픽, 챌린저 시리즈 경기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합니다.

i. ISU 시니어 및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이벤트, ISU 주니어 및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ISU 챔피언십, 챌린저 시리즈 경기,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게임, 동계 올림픽 대회의 기술 패널 또는 레프리의 구성원 중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회의 테크니컬 패널 또는 레프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규칙 121, 단락 3.k) ii) 5 참조); 대부모 관계; 스케이터, 그의/그녀의 부모, 다른 친척 또는 코치와의 친밀한 우정 또는 개인적 적대감; 그리고 코치로서도



활동하는 테크니컬 패널의 경우 스케이터의 코치와 강력한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그랑프리 이벤트에서 스케이터를 코칭하는 코치는 다른 시니어 그랑프리 이벤트 또는 같은 시즌의 주니어 및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기술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이벤트에서 스케이터를 코칭하는 코치는 다른 주니어 그랑프리 이벤트 또는 같은 시즌의 주니어 및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기술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ii. 어떤 개인도 본인이 속한 ISU 회원국의 선수 중 바로 전 시즌에 ISU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5위를 차지했거나 해당 동계 올림픽에서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스케이터/페어/아이스댄스 커플이 참가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종목에서 기술 패널의 구성원이나 레프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iii.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의 기술 패널 구성원과 레프리를 임명할 때, 가능한 해당 종목에서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스케이터가 속해 있는 ISU 회원국의 오피셜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종목의 기술 패널 구성원과 레프리는 가능한 한 모두 해당 ISU 선수권 대회에서 해당 종목에서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스케이터가 속해있는 ISU 회원국 소속이어야 합니다.
- iv. 동계올림픽에서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레프리로 임명된 개인은 같은 시즌에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ISU 회원국의 국내 선수권 대회 또는 기타 국가 대회에서 어떠한 종목의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레프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v. ISU 회원국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총장, CEO, 상임이사, 스포츠 디렉터 또는 이와 동등한 직책은 해당 ISU 회원 기능에서 선출/임명된 근무 기간 동안 ISU 선수권 대회, ISU 시니어 및 주니어 그랑프리 이벤트, ISU 그랑프리 파이널 주니어 및 시니어,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게임, 동계 올림픽 게임 또는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기술 패널 또는 레프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d) 저지

- i. 동계올림픽대회와 동일한 시즌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국내대회가 아닌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에 참가하는 타 ISU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국내선수권대회 또는 국내대회에서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저지로 활동한 사람은 해당 시즌 동계올림픽대회의 저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ii. ISU 회원국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CEO, 전무이사, 스포츠 디렉터 또는 이와 동등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선출/임명된 임기 동안 ISU 선수권 대회, ISU 시니어 및 주니어 그랑프리 경기, ISU 그랑프리 파이널 주니어 및 시니어,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동계 올림픽 경기 또는 챌린저 시리즈 경기에서 저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e) 이해 상충 평가 및 보고에 대한 ISU 오피셜의 책임

- i. 이해 상충에 대한 위의 예는 모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테크니컬 패널의



구성원 또는 레프리 또는 저지로 임명된 각 오피셜은 이해 상충 상황에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의 경우 잠재적 이해 상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피겨 스케이팅 부회장과 해당 상황에 대하여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이해 상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i. 오피셜은 위의 b-d항에 설명된 대로 오피셜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ISU 피겨스케이팅 부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b-d항에 따라 그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오피셜은 ISU 양식에 따라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상황에 처하였거나 이해 상충 상황의 가능성이 ISU 시즌 중 또는 나중에 발생할 경우, ISU 피겨 스케이팅 부회장은 해당 오피셜 및/또는 ISU 회원국으로부터 즉시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제 12조. 영향과 조작

12.1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ISU 관할권에 속한 모든 스케이팅 이벤트의 과정 및/또는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삼가야 합니다.

12.2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쟁 조작 방지에 관한 올림픽 운동 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모든 종류의 부패에 연루되거나 내부 정보를 오용하거나 ISU 회원 코치, 스케이터 또는 그의 가족, ISU 임원 또는 ISU 회원에 대한 편애 또는 편견을 금지합니다.

12.3 ISU 오피셜은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국가적 편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12.4 ISU 오피셜은 ISU 일반 규정 125조 3항에 따라 ISU 이벤트에서 오피셜과 관련된 부적절하거나 불규칙한 행위를 관찰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레프리 또는 ISU 대표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13조. 도박

13.1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주최하는 스케이팅 이벤트 및 ISU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스케이팅 이벤트/활동, 동계 올림픽 게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그리고 ISU가 스포츠를 대표하는 게임 및 기타 이벤트/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든 스키이팅 분야이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스키이팅과 관련한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13.2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해당 스포츠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베팅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3.3 본 조항의 목적에서 "베팅"은 돈을 얻기 위해 스포츠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하는 스포츠 베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윤리 강령은 다른 도박(포커 및 카지노 서비스) 또는 복권 서비스, 빙고 서비스, 스크래치 카드 또는 프로모션 게임으로 구성된 판촉 서비스와 같은 행운의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4조. 보고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회장, Integrity Ombudsperson(현재 Christine Cardis, ombudsperson@isu.org) 또는 IOC Integrity and Compliance Hotline(www.olympic.org/integrityhotline)을 통해 IOC에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종류의 베팅, 조작, 부패 및/또는 내부 정보의 오용에 대한 정보나 접근 방식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15조. 도핑

15.1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반도핑 규정과 ISU 반도핑 절차의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5.2 코치와 기타 선수 지원 인력은 선수와의 모든 상호 작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 목록에 있는 보충제나 물질을 제안, 강요 또는 은밀하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도핑 규칙을 준수하고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스포츠의 성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나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물질의 사용을 촉진/가능하게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된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며, 선수들에게 도핑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책임과 상충되는 개인적 행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 16조. 불법약물

ISU 이벤트 또는 ISU가 승인한 모든 활동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참석하는 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불법 약물을 배포,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불법 약물 사용 또는 약물 규칙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제 17조. ISU 또는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막거나 이에 보복하는 행위

선의로 ISU, ITA, WADA, 기타 반도핑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또는 징계 기관, 청문 기관 또는 ISU, ITA 또는 WADA를 대신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도핑 규칙 위반, ISU 윤리 강령 위반 또는 WADA 강령 불이행과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모든 유형의 보복에 관여하는 것은 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 18조. ISU 트랜스젠더 정책 위반

ISU 트랜스젠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트랜스젠더 정책에 명시된 모든 자격 기준 및 조건, 모니터링 및 제출 요건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ISU 트랜스젠더 정책의 자격 기준 및 조건 및/또는 모니터링 및/또는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9조. 제재사항

본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ISU 정관 25조에 따라 징계 절차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0조. 규정 충돌

ISU 윤리강령 조항이 정관,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기술 규정 조항과 충돌이 있는 경우 정관,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기술 규정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 21조. IOC 윤리 강령 및 기타 IOC 윤리 문서

21.1 IOC 윤리 강령 및 아래 2절에 나열된 기타 IOC 윤리 문서를 본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게 유지됩니다.

21.2 IOC의 기타 윤리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OC 위원장 선출에 관한 지침;
- 올림픽 당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상충에 관한 규칙;



-
- 2026년 동계 올림픽 후보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
 - 청소년 올림픽 후보 선정 절차에 대한 행동 규칙;
 - 2020년 도쿄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국제 연맹에 대한 행동 규칙;
 - 올림픽 및 스포츠 운동의 선의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보편적 원칙;
 - 경쟁 조작 방지에 대한 올림픽 운동 강령;
 - IOC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 원칙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규정하는 절차 규칙.



윤리 선언문

[이름 및 세부 정보]("주최자")는 ISU가 승인한 국제 대회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ISU에 선언합니다.

- (i) 주최자는 공정한 플레이, 정직, 존중, 진실, 공정성, 윤리적 행동 및 스포츠 태도의 최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최자는 스포츠 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아이스 스케이팅 이벤트의 진행 및/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합니다.
- (ii) 주최자는 어린 스케이터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적용합니다(특히 직원, 서비스 제공자 및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오피셜과 관련).
- (iii) 주최자는 어리고 취약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스케이터, 오피셜, 자원봉사자 및 직원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 (iv) 주최자는 어린 스케이터를 착취하지 않으며, 미성년 스케이터(18세 미만)는 적임자에 의해 대리되도록 합니다.
- (v) 주최자는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를 공개하고 이해 상충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모든 활동을 삼가합니다.
- (vi) 주최자는 스케이팅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스케이팅의 성실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vii) 주최자는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최종 판결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조직 범죄 조직 참여; 부패; 사기; 테러 활동과 관련된 범죄; 불법 마약과 관련된 범죄; 자금 세탁.
- (viii) 주최자는 이벤트 장소나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이나 주류(ABV 20% 이상)를 광고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ix) 주최자는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아니며 행사장이나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스포츠 베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x) 주최자는 가능한 한 빨리 ISU 회장 또는 IOC Integrity and Compliance Hotline(www.olympic.org/integrityhotline)을 통해 IOC에 베팅, 조작, 부패 및/또는 내부 정보의 오용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합니다. 주최자는 또한 ISU 정관 125조 3항에 따라 모든



행사에서 오피셜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불규칙한 행동이나 제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최자는 상기 원칙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국제 대회 개최 허가가 철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철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은 주최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을 ISU에 인정합니다.

[주최자]

[일자]

* 본 선언의 목적을 위해 "베팅"은 스포츠 베팅 활동, 즉 돈을 따기 위해 스포츠 이벤트 결과에 베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선언은 다른 도박 활동(포커 및 카지노 서비스)이나 행운의 게임(예: 복권 서비스, 빙고 서비스, 스크래치 카드 또는 프로모션 게임으로 구성된 판촉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